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45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이진숙·나경원·이종욱
김석기·김태규·유상범
박대출·엄태영·강명구
김기현·장동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장소를 정의에 넣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야 하고,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추가하고,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며, 관련자 또

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항하여”를 “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역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를 “국가보훈부에”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명단의 공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u>대항하여</u>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u>대항하여 광주 관련 지역</u> <u>에서</u> ----- -----.
2. (생략)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u>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u>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 ----- ----- ----- <u>국가보훈</u> <u>부에</u> ----- -----.
② ~ ⑤ (생략)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24조(명단의 공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명단을 매년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u>
--	----------------------------------